###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52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66	김남희	2024. 7. 26.	2024. 11. 14.
	2202366	진성준	2024. 7. 30.	2024. 11. 14.
	2203571	서영석	2024. 9. 3.	2024. 11. 14.

-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 사제2소위원회(2024. 11. 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11. 21.)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등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등과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출시·사용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도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중 "용구를"을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생 략)	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
	<u>수</u> )
<u>&lt;신 설&gt;</u>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u>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④</u> ~ <u>⑥</u> (생 략)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1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ㅂ}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	
에 필요한 <u>용구를</u> 제공하	<u>용구(소프트웨어를</u>
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	<u> 포함한다)를</u>
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